

한국자산에셋운용(주)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

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(1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전 하기 정보

-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(2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전 하기 정보

-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
-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

2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(1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

- 투자부서, 운용부서 및 고유재산운용부서 상호간(다만, 해당 투자건에 대한 투자부서와 운용부서 상호간 정보교류는 허용)

(2)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

-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- 회사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 주의가 필요한 경우
- 법상·계약상 또는 사회통념상 회사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

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유형 및 대응방안

거래유형	대응방안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회사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(이하, '회사 등')가 회사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(이하, '회사 집합투자기구')의 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· 회사 등이 회사 집합투자기구의 피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·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할 때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법률상 금지되는 경우 수행하지 않음 ·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에도 담당 부서간 정보교류차단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정보를 취득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안 됨